



# 참가안내

## 신청기간

2022년 9월 30일(금)까지 ※ 부스 소진시 조기 마감

## 부스사용료

(부가세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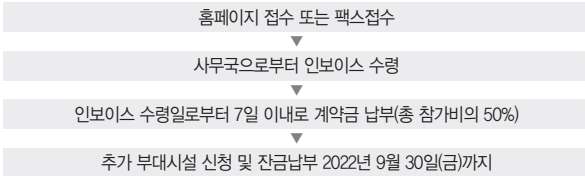
구분	독립부스	기본부스	프리미엄부스
단가	1,700,000원	2,000,000원	2,200,000원

## 할인혜택

(부가세 별도)

구분	할인가격	기준
조기신청할인	1차	200,000원 / 2022. 5. 31(화)까지
	2차	100,000원 / 2021. 7. 29(금)까지
재참가할인 (2019~21년)	100,000원	1회이상 참가업체
벤처기업 / 제조업체	100,000원	증빙서류 필요

## 신청방법 및 참가비 납입방법



# 참가규정

### 제1조 용어정의

-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전시회 개최와 관련 주최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엑스코'를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제17회 국제부품소재산업전(Parts&Materials Show 2022)"을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인보이스 수령 후 7일 이내에 총 참가비의 50%를 참가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신청 마감일 2022년 9월 30일(금) 이후 참가신청을 한 전시자의 경우, 2022년 10월 14일(금)까지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 납부금을 반납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부대시설 신청서 등 제반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제3조 부스배정

- 주최자는 계약금 입금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공사 이전에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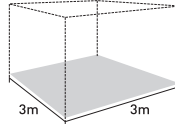
### 제4조 전시장 관리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직책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 참가비 납입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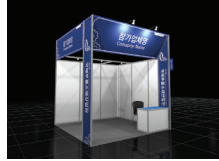
- 전시자가 참가비 전액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전시자가 부스사용료, 부대시설비 사용료 등 제반비용 미납시, 주최자는 완납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 부스안내



### 독립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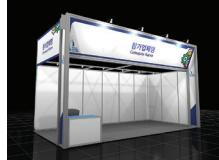
전시면적만 제공하며, 참가업체 자체 부스 디자인 및 시공필요



### 기본부스

전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조립식 기본 부스장치물을 일괄 시공

- 벽체, 바닥 파이텍스, 상호간판, 부스번호판, 전기배선 (2구 콘센트1개), 조명(형광등 4개, Spot 3개, Arm spot 2개), 전기 1KW(업체당), 안내데스크/의자 1조(업체당)



### 프리미엄부스

기본부스와 독립부스의 중간 형태로 저비용으로 독립부스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패키지부스

- 최소 2부스(18㎡) 이상
- 벽체, 바닥 파이텍스, 상호간판, 부스번호판, 전기배선 (2구 콘센트 1개), 조명(형광등 4개, Spot 3개, Arm spot 2개), 전기 1KW(업체당), 안내데스크/의자 1조(업체당)

※상기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을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납입 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1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3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2022년 10월 1일 이후 취소 혹은 축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

-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최사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사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한 품목외의 전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경우 주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9조 장치 및 전시품 반출

-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반출(주최자 지정 반출 시간 이전에 반출)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전시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 전시자는 전시기간, 장치 및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1조 방화규칙

-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보충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엑스코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쟁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